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경제 및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Living Environments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Chungbuk Province and Its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Focused on the Economic and Housing Environments-

서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沈 曠
조 교수 金大年
부 교수 趙明姬
조 교수 趙英姬

Dept. of Home Management, Seowon University

Associate Prof. : Young Shim

Assistant Prof. : Dae Nyun Kim

Associate Prof. : Myoung Hee Cho

Assistant Prof. : Young Hee Cho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living environments, focused on economic and housing environments,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Chungbuk and to provide for the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 the economic environment, 70% of the

* 1995년 교육부 지역개발연구과제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lderly households receive the economic help from children, but the amount of the help is not much. Less than 20% of the households receive the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Most elderly households had more assets than debt. The households tend to spend more for the necessities than for the non-necessities. The higher the income, the more the assets, and the higher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the higher is the life satisf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elderly with opportunities to increase their income.

For the housing environment, most elderly live in their own detached house with average size of 23 pyung. And there is 1.6 households per house. The condition of housing facilities is poor. The elderly prefer staying in the same place to moving, and invest little for their housing even though being able to afford to do so. The housing satisfaction, which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ownership, the size, the quality change in moving, and the housing facilities, is correlated with the satisfaction of their condition as elderly households, and their living satisfaction. Therefore, thoughtful policy is required to improve the standard of housing condition for the elderly households.

I. 서론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범세계적인 사회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70년 6.1%에서 1990년 7.6%로 증가하였고, 노인단독가구는 1985년 4.1%에서 1990년 5.7%로 증가하였다(인구주택 총조사, 1991). 이와같이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율이 노인인구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인단독가구가 갖는 특수성은 노인이 스스로 선택한 가족형태가 아니라 핵가족 선호, 노인부양의식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발생된 것이며, 외부지원체계가 미약한 현실 속에서 노인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능력과 심리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게다가 효를 자식의 도리로 여겨왔던 우리 민족은 노인문제를 사회화시키려는 자세가 소극적이었다. 또,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의 노인복지정책이 주로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녀취업이나 분가 등으로 형성된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문적으로 보면, 노인단독가구를 대

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로 체계적인 면이 부족하고 일회적인 기술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다. 또, 노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제한된 일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연구로 일반화시키기 부족하다. 지역적으로 볼 때, 충북지역은 노인인구가 8.4%로 타 지역(평균 5.7%)에 비해서 높을 뿐 아니라 노인인구의 이동이 매우 안정된 상태이므로 노인복지정책 입안을 위한 분석대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노인단독가구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노인단독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생활환경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지역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경제환경,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내재한 문제요인을 밝혀냄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중에서 경제환경과 주거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사회적 관계와 가사노동환경에 관련된 내용은 후속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제환경

Tynan과 Drayton(1988)에 의하면 노인들은 축적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소비지출을 행한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경제환경을 좀더 분명하게 파악하려면 소득, 자산, 그리고 소비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대개 퇴직 이전시기에 고소득을 취하며 가구주의 연령이 55-65세 일때 금전적 재산이 최고 수준에 달한다(Tynan & Drayton, 1988).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경우 생물학적 노화와 노동능력의 저하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정년퇴직 등 고용상태의 변화로 인한 근로수입의 격감, 노년기 이전의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한 개인적인 노후대책의 미비,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것이 보편적 양상이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 단독가구는 주로 근로소득, 자녀보조를 통하여 수입을 획득하였고, 재산소득과 정부의 생활보조를 통하여 수입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구, 이웃보조, 연금을 통한 수입은 미미하였다.

자산은 노인가구, 특히 은퇴한 노인가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하나이다. 생애주기시설에 의하면 가구는 노후의 소비를 위해 자산축적행동을 보인다고 한다(Ando & Modigliani, 1963). 따라서 자산 및 부채는 노인가구의 경제적 복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노인가구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비노인가구에 비해 크기 때문에(Upp, 1983; Torrey & Tauber, 1989; Radner, 1989), 만일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인가구의 경제적 복지는 왜곡될 수 있다.

재화와 용역은 가계가 충족하기를 원하는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총 소비지출의 양이 많을수록 복지수준은 높다. 그러나

어떤 재화나 용역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항목인 반면에, 어떤 재화나 용역은 가계의 선호와 취향에 의한 항목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에 기초한 항목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가계가 어떠한 소비항목 구조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그 가계가 누리는 복지수준은 달리 측정된다(Magrabi, et al, 1994).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에 의하면 노년기의 경제적 사정의 악화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집중적으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시키므로 자연스럽게 여가활동, 사회활동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지출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생활의 장이 축소됨으로써 생활만족도, 복지상태가 저하된다. Crandel(1980)에 의하면 노인들은 돈이 없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계획된 여가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고 무료함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출과 연령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Dardis, Derrick & Lehfeld, 1981; Chen & Chu, 1982; Alexson & Penfield, 1983; Blaylock & Smallwood, 1986; Hama & Chen, 1988)에 의하면, 노인들은 비노인들에 비해 식료품, 광열비, 의료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환경

사회 일선에서 물러난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거 환경은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은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안식처로서의 기능과 물리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환경으로서의 기능을 요구받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에게는 이러한 기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더구나, 노인은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환경은 확립적으로 계획되거나 대량으로 공급되어서는 안되며, 노인이 요구하는 제반 조건과 각자의 주거생활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고 융통성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복지 수준이 비교적 높은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65년 주택도시개발성이 발족되면서 노인주택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1978년 특별양호 노인홈 서비스법에 의해 노인주택 정책에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포함되었다(조재순 외, 1995). 스웨덴의 경우, 1981년 현재 노인의 90%가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며, 6%가 노인홈에, 4%가 양로시설이나 장기 요양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1970년 이후 스웨덴 노인정책의 기본 원칙은 노인이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으로, 주거정책은 노인이 생활해 왔던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웨덴의 노인들은 새로운 집합주거단지로 이동하면 수준높은 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이에 기존 노인주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재건축을 위시한 노후설비의 교체, 가구 재배치, 실내디자인, 조명 계획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oalt & Akerman, 1984). 스웨덴의 노인주거환경 개선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지방정부는 노인이 만족할 만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요 사업내용은 기존 노인주택의 개조와 보수이다(Borjesson, 1984).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용 시설주거 일부를 제외하면 일반 노인을 위한 주택 계획이나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3대 동거형 아파트나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실버타운 건설은 우리나라도 노인에게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러면에서 아직은 초보단계에 불과하다.

노인단독가구는 단독주택 거주율이 높는데, 특히 농촌지역이 높다. 이것은 농촌에 단독주택 비율이 높다는 주택시장의 특성 이외에도 친숙해진 환경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노인의 성향 때문이다(이가옥 외, 1992; 장운정, 1990). 중년층의 노후 희망주택(고경필, 윤재용, 1995; 오찬옥, 1993; 유혜정, 1992)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에 관계없이 단독주택이며, 단독주택 거주자가 아파트 거주자보다 단독주택을 더 선호한다. 이것은 노후주택이 아닌 경우 바람직한 주거유형이 아파트였다는 연구결과(김대년, 1992)나 가족생활주기 단계 중 부부만 사는 노년기에 아

파트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홍형욱, 1989)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주택소유형태는 주거만족에 영향력있는 변인이다(Whiteford & Morris, 1986). 자가 노인이 비자가 노인보다 주거만족도가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독신노인일수록 자가율이 낮다. 노인은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 것을 꺼리며, 자신의 전용실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 노인전용실의 확보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낮으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낮다. 노인의 공간 요구가 큰 것은 자녀가 방문하여 지낼 공간, 추억이 담긴 물건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 이외에 많은 시간을 주택에서 보내는 노인의 생활패턴 때문이다(박경란, 제미경, 오찬옥, 1995). 중년층은 노후에 자녀가족과 별거상태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 받으면서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기를 기대하는데(조재순 외, 1995) 반해서, 노인은 자녀세대와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3대 동거형 주택을 가장 선호한다. 그러나, 노인세대용 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노인의 요구 또한 높으므로 노인주거유형은 노인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화되어야 한다(허병이, 1995).

3. 충청북도의 노인복지사업

충청북도는 1996년도 현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의 재정지원으로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여가활동지원, 노인복지시설 보강이라는 기본 목적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복지 사업의 하나인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은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노령수당 지원, 교통수당 지급, 경로식당 운영(무료급식), 저소득층 노인 우선의 노인건강진단 시행, 양로 및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와 보호비 지원,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주택공동생활 형태의 노인의 집(3-7명씩) 운영, 재가노인 봉사사업(가사, 건강관리, 정서적/사회적 서비스)이다.

여가활동 지원은 노인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

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전개된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운영의 행정적 지원, 노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 마련,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무료하고 불편전한 생활을 일소하고 사회생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이다.

노인복지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은 무료양로원(4개), 무료요양원(3개), 실비요양원(1개)의 노인복지시설 현대화 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요양시설의 증/개축, 장비보강, 시설종사자의 대우수당 지급이다.

이와 같이 충청북도의 노인복지 관련사업은 비교적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을 제외하면 주로 저소득층,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가구 형태인 노인단독가구 노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Ⅲ. 연구 방법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문항은 경제환경, 주거환경, 사회관계, 가사노동환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으나, 지면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경제환경과 주거환경을 주로 다루었다.

조사대상은 충북지역(북부:제천, 충주; 중부:청주, 청원; 남부:옥천, 진천)에서 노인단독가구 상태로 생활하는 노인(부부 중 1인 이상이 60세 이상인 가구로 제한)이다. 문항개발을 위해 1995년 9월 20일-10월 10일 청주 거주 60세 이상 단독가구 남녀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본조사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1995년 11월 15일부터 1달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원은 서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3, 4학년 학생 25명으로, 조사원은 2차에 걸쳐 면접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본 조사에 임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 표본수는 400명이었으나, 충북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를 개별 방문하여 진행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면접은 노인 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 자료 중 기재내용이 부실하다고 판정된 자료를 제외하고 244부가 결과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설정된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t검정, 교차분석, 일원변량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노인단독가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노인은 244명으로 남자 100명, 여자 144명이며, 연령은 65-74세가 42.3%로 가장 많고 다음이 64세 이하(36.1%), 75세 이상(21.6%)의 순이다. 교육수준은 무학력(문맹 15.2%, 한글해독 18.8%, 서당 2.0%)이 36.0%로 가장 많으며 국졸 34.3%, 중졸 이상 29.8%이다.

건강상태는 전체 노인의 39.0%가 나쁜 편으로 남자(30.6%)보다 여자(45.8%)가 더 나빴다. 남자 노인의 과거 직업은 농사(37.4%)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공무원(18.2%), 기업체(10.1%)의 순이고, 현재는 무직이 59.8%, 농사가 18.6%이다. 미래 희망직업은 직업을 갖고 싶지 않다(63.2%)가 가장 높아서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 노인의 과거 직업은 주부/무직이 50.3%로 가장 많고 다음이 농사(24.5%), 판매서비스직(12.9%)의 순이고, 현재 직업은 주부/무직이 79.1%, 농사가 11.5%를 차지한다. 가구별로 보면, 전체 167가구(유배우 가구; 58.1%, 무배우 가구; 41.9%)의 월평균소득은 20만원 미만인 24.4%, 20-40만원 미만이 20.7%로 45% 정도가 40만원 미만이다. 그러나 80만원 이상인 가구가 25.9%나 되어 평균소득은 701,000원이다. 평균 자녀수는 4.0명이다. 현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은 10년 미만이 26.8%로 가장 많으나, 평균 거주기간은 28.4년으로 매우 길다. 노인단독가구 지속년수는 5년 미만이 28.3%, 5-10년 미만이

27.7%로 56.0%가 10년 미만이다. 노인단독가구의 형성 이유는 자녀 결혼이 41.9%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자녀 직장(25.1%)으로 인한 분가에 의한 것이다.

2. 노인단독가구의 경제환경

(1) 소득구조의 특성

① 가구유형별 소득구조

충북 거주 노인단독가구의 각 소득원에 대한 소득 유무를 보면<표 1>,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37.1%(할머니 근로소득; 18.6%, 할아버지 근로소득; 20.4%)이었으며, 재산소득 24.1%, 연금 9.6%, 공적부조 17.4%, 자녀보조 68.1%로 밝혀졌다. 이로써 자녀보조를 받는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상당히 높으나 공적부조나 연금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 근로소득이 281,216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산소득, 자녀보조, 연금, 공적부조의 순으로 나타나 연금이나 공적부조는 수혜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금액도 매우 작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배우 노인단독가구(이하 유배우 가구)와 무배우 노인단독가구(이하 무배우 가구)를 구분하여 소득구조를 분석한 결과, 두 가구유형 모두 66% 이상이 자녀보조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소득액을 비

교하면, 유배우 가구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자녀보조, 연금, 공적부조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무배우 가구는 재산소득, 자녀보조, 근로소득, 공적부조, 연금의 순이었다. 이것으로 자녀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크지만 실제적인 금액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며, 노인단독가구에 지급되는 공적부조액은 대단히 미미하다(유배우 가구; 8,160원, 무배우 가구; 26,143원)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소득원에 대한 가구유형별 소득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유배우 가구의 근로소득(389,564원)이 무배우 가구의 근로소득(90,629원)보다 높았는데, 이는 무배우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주가 대부분(86%)여성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배우 가구의 연금이 무배우 가구의 연금보다 높게 나타나 무배우 가구가 유배우 가구에 비해서 열악한 소득환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② 관련변인별 소득구조

관련변인별 소득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2>, 할머니 근로소득, 할아버지 근로소득, 연금, 소득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64세 이하가 75세 이상보다 할머니 근로소득이 많았다. 또, 64세 이하는 65-74세 이하나 75세 이상보다 할아버지 근로

<표 1> 소득원에 따른 소득의 유무와 가구유형별 소득의 차이

소득원	가 구	전체가구 (n=167)			유배우가구 (n=97)			무배우가구 (n=70)			t 값
		n	%	m ² (원)	n	%	m (원)	n	%	m (원)	
근로소득 ¹⁾	있음	62	37.1	281,216	45	47.9	389,564	16	22.9	90,629	-4.26***
	없음	105	62.9		49	52.1		54	77.1		
재산소득	있음	40	24.1	216,512	29	31.2	244,785	11	15.7	188,229	-.35
	없음	126	75.9		64	68.8		59	84.3		
연금	있음	16	9.6	103,413	12	12.8	164,894	4	5.7	25,286	-2.65**
	없음	151	90.4		82	87.2		66	94.3		
공적부조	있음	29	17.4	15,731	9	9.6	8,160	19	27.1	26,143	1.68
	없음	138	82.6		85	90.4		51	72.9		
자녀보조	있음	109	68.1	167,525	58	66.7	211,058	48	68.6	108,886	.16
	없음	51	31.9		29	33.3		22	31.4		

1) 근로소득은 할머니 근로소득과 할아버지 근로소득을 합한 것임

2) m은 각 소득원에 대해 소득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평균소득임

** P<.01, *** P<.001

소득, 연금, 총소득이 많았다. 이는 65세가 넘으면 소득이 점차 감소한다는 Tynan과 Drayton의 주장과 일치한다. 할아버지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 소득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할아버지 근로소득, 연금, 소득은 중졸 이상이 중졸 미만보다 많았으며, 재산소득은 중졸 이상이 국졸보다 높았다. 이로써 교육과 소득이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소득과 자녀보조, 소득은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재산소득은 도시근교의 가구가 도시가구보다 많았으며, 자녀보조, 소득은 도시근교의 가구가 도시나 농촌의 가구보다 많았다. 이는 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가 도시근교의 노인단독가구보다 소득환경이 더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아버지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 소득은 주거소유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할아버지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 소득 모두 자가의 노

인단독가구가 비자가의 노인단독가구보다 많았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노인단독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자산구조의 특성

① 가구유형별 자산구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동산, 부채로 구분하여 자산 유무와 가구유형별 자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 전체 노인단독가구의 33.1%가 동산, 25.3%가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며, 13.3%가 부채를 지고 있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액은 평균 91,687,270원이었다. 유배우 가구는 41.5%가 동산을, 44.0%가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며, 16.0%가 부채를 지고 있었다. 무배우 가구는 18.8%가 동산, 12.0%가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며, 8.7%가 부채를 지고 있었다. 순자산액을 보면, 유배우 가구는 50,763,920원, 무배우 가구는 151,094,400원으로 무배우 가구가 좀더 여유있는 자

<표 2> 관련변인별 소득의 차이

변인	소득원	근로소득 (할머니)		근로소득 (할아버지)		재산소득		연금		자녀보조		소득 ²⁾	
		n	m(원) D ¹⁾	n	m(원) D	n	m(원) D	n	m(원) D	n	m(원) D	n	m(원) D
연령 (세)	64이하	58	123,690 a	58	470,466 a	58	303,586	58	267,241 a	52	247,115	52	1,296,635 a
	65-74	69	85,725 ab	69	76,333 b	68	115,588	69	25,652 b	68	139,029	67	384,881 b
	75이상	39	5,641 b	39	20,513 b	39	268,539	39	000 b	39	115,385	39	451,872 b
	F값		2.582***		12.223***		.681		8.867***		.995		10.882***
학력	무학력	78	49,603	78	76,026 b	78	180,551 ab	78	18,846 b	78	179,192	78	528,628 b
	국졸	56	89,286	56	146,732 b	55	59,236 b	56	19,643 b	54	140,315	53	446,189 b
	중졸이상	33	134,546	33	591,121 a	33	563,636 a	33	445,455 a	28	187,500	28	1,654,429 a
	F값		1.363		11.975***		3.10*		20.166***		.125		12.628***
거주지역	도시	79	77,405	79	162,873	78	148,949 b	79	131,645	77	132,922 b	79	616,947 b
	도시근교	29	94,828	29	234,483	29	562,000 a	29	157,586	25	411,880 a	25	1,202,600 a
	농촌	58	76,621	58	241,155	58	138,362 ab	58	29,310	57	106,526 b	58	586,877 b
	F값		.058		.392		2.343*		1.602		3.771*		2.710*
주택소유	자가	112	88,750	112	247,589	111	319,649	112	144,643	105	153,229	104	868,894
	비자가	54	62,389	54	53,704	54	8,519	54	8,804	54	194,722	54	371,111
	t값		-.77		-3.34***		-2.85**		-3.09**		.37		-2.91***

1) D: Duncan's multiple-range test

2) 소득은 할머니 근로소득, 할아버지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 자녀소득, 친구·이웃보조, 공적부조, 기타소득을 합한 것임

* P < .05, **P < .01, ***P < .001

연령과 학력: 유배우 가구는 여자노인, 무배우 가구는 가구주의 것임

산환경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변인별 자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 동

<표 3> 자산형태에 따른 자산의 유무와 가구유형별 자산의 차이

가 구		전체가구 (n=167)			유배우가구 (n=94)			무배우가구 (n=70)			t 값
		n	%	m (원)	n	%	m (원)	n	%	m (원)	
동 산	있음	55	33.1	10,944,600	39	41.5	17,120,200	13	18.8	2,850,700	-2.09*
	없음	111	66.9		55	58.5		56	81.2		
부동산	있음	41	25.3	81,524,000	32	44.0	34,915,000	8	12.0	148,377,000	.78
	없음	124	74.7		62	66.0		60	88.0		
부 채	있음	22	13.3	781,330	15	16.0	1,271,280	6	15.7	133,300	-2.82**
	없음	144	86.7		79	84.0		9	84.3		

* P < .05, ** P < .01

가구유형별 자산을 보면, 동산과 부채에서 유배우 가구와 무배우 가구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동산과 부채 모두 유배우 가구가 무배우 가구보다 더 많았다. 이는 한국보건연구원(1989)의 조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채의 경우 가구원수로 인해 유배우 가구가 무배우 가구보다 제한된 수입에 비해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② 관련변인별 자산구조

산과 부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4세 이하는 65세 이상보다 더 많은 동산을 소유하였고,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다. 학력에 따라 동산과 부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졸 이상이 무학력보다 동산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중졸 이상이 무학력이나 국졸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부채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도시근교나 농촌의 가구가 도시의 가구보다 부

<표 4> 관련변인별 자산의 차이

변 인	자 산	동 산			부 채		
		n	m(원)	D	n	m(원)	D
연 령	64세 이하	57	25,849,100	a	57	1,675,440	a
	65-74세	63	4,388,400	b	69	418,840	b
	75세 이상	39	1,494,900	b	39	135,900	b
	F값		4.021*			4.169*	
학 령	무학력	78	1,038,500	b	78	221,800	b
	국졸	56	16,935,700	ab	56	748,210	b
	중졸이상	32	23,493,800	a	32	2,203,130	a
	F값		2.874*			5.346**	
거주 지역	도시	79	6,726,600		79	12,660	b
	도시근교	28	15,725,000		28	1,750,000	a
	농촌	58	14,570,700		58	1,374,140	a
	F값		.557			5.581**	
주택 소유	자가	111	16,146,000		111	1,156,760	
	비자가	54	455,600		54	24,070	
	t값		-2.73**			-3.34***	

* p < .05, ** p < .01, *** p < .001

채가 더 많았다. 이는 도시근교나 농촌의 가구가 도시의 가구보다 안정적이지 못한 자산환경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주거소유형태에 따라 동산과 부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가의 가구가 비자가의 가구보다 동산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또한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다.

(3) 소비구조의 특성

① 가구유형별 소비구조

각 지출비목에 대한 지출 유무를 분석한 결과<표 5>, 식료품비, 광열·수도비는 전체 노인단독가구의 90% 이상, 보건위생비, 집세는 80% 이상, 교통통신비, 의료비는 70%가 지출하였다. 유배우 가구와 무배우 가구로 구분하여 지출유무를 살펴보았을 때, 유배우 가구의 70% 이상이 교육·교양오락비를 지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두 가구유형이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거유지비, 가구·가사용품비, 기타 비목비에는 각 가구의 반 이상이 지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출양상은 일반적으로 노인단독가구들은 필수적 성격을 지닌 비목에 주로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유형별 지출액을 보면,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가구·가사용품비 등 <표 5>에 제시된 모든 비목에서 유배우 가구와 무배우 가구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각 지출비목에서 유배우 가구의 지출액이 무배우 가구보다 많았다. 이는 주로 유배우 가구의 가구원수가 더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② 관련변인별 소비구조

관련변인별 소비구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표 5> 지출비목에 대한 지출유무와 가구유형별 지출의 차이

비 목	가 구	전체가구 (n=167)			유배우가구 (n=94)			무배우가구 (n=70)			t 값
		n	%	m(원)	n	%	m(원)	n	%	m(원)	
식료품비	있음	153	92.7	103,442	86	93.5	134,946	65	92.9	63,614	-5.29***
	없음	12	7.3		6	6.5		5	7.1		
광열·수도비	있음	152	91.6	33,036	88	94.6	42,656	62	88.6	21,029	-3.27***
	없음	14	8.4		5	5.4		8	11.4		
피복·신발비	있음	91	54.8	9,740	56	59.6	14,332	33	47.8	3,668	-4.10***
	없음	75	45.2		38	40.4		36	52.2		
가구·가사용품비	있음	45	27.1	12,710	28	29.8	5,532	16	23.2	876	-3.55***
	없음	121	72.9		66	70.2		53	76.8		
의료비	있음	128	77.6	12,710	78	83.0	16,374	47	69.1	6,922	-3.24***
	없음	37	22.4		16	17.0		21	30.9		
보건위생비	있음	141	85.8	18,964	86	91.5	26,734	53	77.9	8,514	-3.78***
	없음	24	14.5		8	8.5		15	22.1		
교통통신비	있음	132	79.5	21,687	80	85.1	28,564	49	71.0	11,015	-4.29***
	없음	34	20.5		14	14.9		20	29.0		
교육·교양오락비	있음	103	62.4	11,424	68	72.3	16,936	34	50.0	4,162	-3.50***
	없음	62	37.6		26	27.7		34	50.0		
교제비	있음	102	61.1	44,503	66	70.2	60,181	35	50.0	22,500	-2.88**
	없음	65	38.9		28	29.8		35	50.0		
공과금	있음	96	57.8	24,458	56	59.6	32,521	38	55.1	13,725	-2.95**
	없음	70	42.2		38	40.4		31	44.9		

** p < .01, *** p < .001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 학력, 거주지역,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 비목별 지출액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64세 이하, 65-74세 이하, 75세 이상의 순으로 식료품비, 교통통신비를 많이 지출하였다. 공과금은 75세 이상, 65-74세 이하, 64세이하의 순으로 지출을 많이 하였다. 주거유지비, 피복·신발비, 가구·가사용품비, 교육·교양오락비, 기타비목은 64세 이하가 65-74세 이하와 75세 이상보다 많았다. 광

열·수도비는 64세 이하가 75세 이상이 더 많았다. 의료비, 보건위생비는 64세 이하와 65-74세 이하가 75세 이상보다 더 많았다. 교제비는 75세 이상이 64세 이하와 65-74세 이하보다 더 많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의료비, 교제비,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비목에 대해 중졸 이상이 무학력이나 국졸보다 지출이 많았다. 의료비는 중졸 이상이 무학력보다 더 많았다. 이로써 학력과 소득은 정

〈표 6〉 관련변인별 지출의 차이

변인	비 목	식료품비		집세		주거유지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가구·가사용품비	
		n	m(원) D	n	m(원) D	n	m(원) D	n	m(원) D	n	m(원) D	n	m(원) D
연령(세)	64이하	57	150,597 a	5	72,000	53	37,623 a	58	44,379 a	58	243,414 a	58	105,000 a
	65-74	68	92,971 b	13	66,923	68	18,623 b	68	32,338 ab	69	57,464 b	69	11,015 b
	75이상	39	52,359 c	5	40,000	39	18,795 b	39	17,590 b	38	34,474 b	38	4,342 b
	F값		14.425***		.398		3.533*		3.861*		15.974***		14.882***
학력	무학력	78	77,744 b	14	42,857 b	77	13,701 b	78	22,654 b	77	41,234 b	77	17,468 b
	국졸	56	94,536 b	8	78,750 b	54	22,685 b	56	30,429 b	56	98,036 b	56	32,500 b
	중졸이상	31	184,194 a	1	200,000 a	30	58,467 a	32	62,906 a	33	325,394 a	33	116,667 a
	F값		16.144***		4.541*		13.735***		9.166***		22.720***		9.481***
거주지역	도시	79	117,114 b	14	84,286 a	77	39,494 a	79	33,494	78	97,347 b	78	36,410 ab
	도시근교	29	135,172 b	1	30,000 ab	26	19,308 b	28	25,786	29	206,759 a	29	85,862 a
	농촌	56	66,000 a	8	27,500 b	57	6,896 b	58	35,328	58	100,241 b	58	29,052 b
	F값		6.934**		2.608*		11.057*		.407		2.700*		2.513*
주택소유	자가	110	118,873	17	53,529	53	21,038	54	29,760	54	29,760	54	3,056
	비자가	54	70,222	6	86,667	107	26,346	111	160,324	111	160,324	61	7,117
	t값		-3.45***		-.73		-.73		-5.16***		-4.78***		-4.42***
	비 목		의료비		보건위생비		교통통신비		교양·교육오락비		교제비		공과금
변인		n	m(원) D	n	m(원) D	n	m(원) D	n	m(원) D	n	m(원) D	n	m(원) D
연령(세)	64이하	58	222,414 a	58	32,397 a	58	39,707 a	57	23,298 a	78	24,410 b	77	8,987 c
	65-74	69	150,594 a	69	14,449 a	69	16,188 b	69	7,073 b	56	28,750 b	56	27,089 b
	75이상	37	50,676 b	37	6,730 b	38	4,658 c	38	1,658 b	33	118,727 a	33	56,091 a
	F값		5.555**		7.232***		20.996***		9.946***		14.804***		14.505***
학력	무학력	76	113,618 b	76	10,948 b	77	9,844 b	77	4,584 b	58	82,603 a	58	44,724 a
	국졸	56	146,179 ab	56	13,661 b	56	18,018 b	55	9,600 b	69	81,174 b	69	17,246 b
	중졸이하	33	252,879 a	33	46,424 a	33	5,546 a	33	30,424 a	39	11,795 b	38	7,263 b
	F값		3.675*		14.099***		37.930***		12.435***		8.359***		10.301***
거주지역	도시	78	14,962 b	78	110,577 b	79	22,532	77	8,377	79	51,405	79	31,810 b
	도시근교	29	33,241 a	29	232,793 a	29	28,103	29	14,517	29	46,035	29	26,517 ab
	농촌	57	17,158 b	57	171,228 ab	57	17,105	58	137,760	58	35,103	57	12,947 a
	F값		2.898*		2.769*		1.295		.907		.494		2.924*
주택소유	자가	54	118,222	54	9,333	54	9,852	54	2,389	54	8,500	54	7,815
	비자가	110	170,473	110	23,682	111	27,369	110	15,782	112	62,259	111	32,415
	t값		-1.27		-2.97**		-4.62***		-4.35***		-5.05***		-4.45***

*P < .05, **P < .01, ***P < .001

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식료품비는 농촌 가구가 도시나 도시근교 가구보다 많고, 집세는 도시 가구가 농촌보다 많았다. 주거유지비는 도시가구가 도시근교나 농촌 가구보다 많고, 가구·가사용품비는 도시근교 가구가 농촌 가구보다 많았다. 피복·신발비, 의료비는 도시근교 가구가 도시나 농촌 가구보다 많았다. 보건위생비는 도시근교의 가구가 도시 가구보다 많았다. 공과금은 농촌 가구가 도시 가구보다 많았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식료품비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모든 비목 <표 6 참조>에 대해 비자가의 노인단독가구가 자가의 노인단독가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였다.

(4) 경제환경과 생활만족도

노인단독가구의 생활만족도는 <표 7>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소득, 자산, 생활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부채는 비관련변인으로 밝혀졌다. 소득이 20만원 미만의 가구는 생활만족도가 불만족이 많은 반면에 40만원 이상의 가구는 만족이 많았다. 이로써 노인단독가구는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성된 자산 역시 생활만족도의 관련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자산이 없는 가구에 비해서 자산이 있는 가구가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노인단독가구가 경험하는 경제환경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생활비가 20만원 미만은 생활만족도가 불만족한 상태인데 비해서 40만원 이상은 만족한 편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비의 지출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소비지출이 많을수록 경제적 복지 정도는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7> 경제환경과 생활만족도

경제환경	생활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n	%	n	%	n	%	n	%
전체 가구		43	25.7	69	41.3	55	32.9	167	100.0
소득	20만원 미만	25	59.5	18	26.9	6	12.0	49	30.8
	20-40만원 미만	7	16.7	15	22.4	11	22.0	33	20.8
	40만원 이상	10	23.8	34	50.7	33	66.0	77	48.4
	소계	42	100.0	67	100.0	50	100.0	159	100.0
		$\chi^2 = 26.296$		d.f. 4		p < .001			
자 ¹⁾ 산	없음	37	86.0	38	55.1	20	37.0	95	57.2
	있음	6	14.0	31	44.9	34	63.0	71	42.8
	소계	43	100.0	69	100.0	50	100.0	166	100.0
		$\chi^2 = 23.714$		d.f. 2		p < .001			
생 ²⁾ 활 비	20만원 미만	24	55.8	27	39.1	8	14.5	59	35.3
	20-40만원 미만	15	34.9	27	39.1	16	29.1	58	34.7
	40만원 이상	4	9.3	3	21.7	31	56.4	50	29.9
	소계	43	100.0	69	100.0	55	100.0	167	100.0
		$\chi^2 = 33.496$		d.f. 8		p < .001			

1) 자산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과 동산을 합한 것임

2) 생활비가 총지출의 대리변수로 사용됨

3.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1) 주거특성

충북 거주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특성 <표 8과 표 9>을 보면, 자가가 67.3%, 비자가(非自家)가 32.7%이고, 단독주택이 67.3%, 비단독주택이 32.7%이다. 거주지역은 도시가 47.3%, 도시근교/농촌이 52.7%이며, 주택당 거주가구수는 1.6가구로, 1가구 거주가 64.1%로 가장 많으나 3가구 이상도 21.6%나 된다. 평균 주거면적은 22.8평이며, 14평 이하가 26.1%, 15-24평이 32.7%로 60% 정도가 24평 이하에서 생활한다.

주거시설 중 난방방식은 재래식 연탄아궁이/연탄보일러가 29.7%이며, 화장실은 재래식이 38.8%이고, 욕실이 없거나 욕실에 온수공급이 안되는 가구가 38.8%이다. 부엌을 보면, 입식 작업대가 없는 가구 28.8%, 수도가 없거나 온수공급이 안되는 가구 33.9%, 연탄/석유를 취사연료로 이용하는 가구 18.2%, 흙바닥 13.2%, 시멘트/타일바닥이 30.0%이다. 충북 거주 노인단독가구의 이러한 주거상태는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주거시설 수준(김대년, 1992)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편이다.

(2) 주거만족도

① 주거특성과 주거만족도

충북 거주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만족도 <표 8과 표 9>를 보면, 53.3%가 만족, 23.6%가 매우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는 주택소유형태, 주거면적, 주거이동 방향, 주거시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주택유형과 거주가구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주거만족도의 관련변인으로 밝혀진 주택유형과 거주가구수가 노인단독가구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에서 활용되어야 할 자료로 생각된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가인 가구의 주거만족도는 높고 비자가는 낮다. 주택유형은 주거만족도의 관련변인은 아니나, 단독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낮은 것은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설비와 근린시설의 수준이 단독주택보다 높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비단독주택이 유지관리가 쉽고 편리하기 때

문에 비단독주택 거주 노인의 주거만족도가 단독주택 거주 노인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박경란, 제미경, 오찬옥, 1995)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주거면적을 보면, 14평 이하와 15-24평의 주거만족도가 25평 이상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

현 주택과 전에 살던 주택을 비교한 주거 수준의 변화를 하향, 평행, 상향이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거이동방향은 주거만족도의 관련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과거 10년간 주거이동을 한 129가구중에서 19.4%가 하향, 36.4%가 평행, 44.2%가 상향이동을 했는데, 상향이동 가구가 하향이동 가구보다 주거만족도가 높았다. 난방방식, 화장실, 욕실, 부엌의 수준은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재래식 아궁이/연탄보일러로 난방하는 가구, 화장실이 재래식인 가구, 욕실이 없거나 온수공급이 안되는 가구의 주거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또, 부엌 작업대가 재래식인 가구, 부엌에 급수 또는 온수공급이 안되는 가구, 부엌바닥이 흙/시멘트인 가구의 주거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주거면적이나 거주가구수에 있어서 큰 발전을 보이지 못했으나, 주택의 질 측정지표인 난방방식, 화장실, 욕실, 부엌의 수준은 급속하게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거주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수준은 매우 열악하며, 이러한 주거특성은 주거만족도를 낮게 하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주거만족도는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표 10>. 즉, 주거만족도가 클수록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크며, 또한 생활만족도도 크다. 따라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②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만족도

노인단독가구 상태로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만족도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 연령,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소득이 20만원 미만인 노인은 주거만족도가 매우 낮는데 반하여 60만원 이상은 높았으며, 64세 이하의 주거만족도가 높고, 75세 이상은 낮

〈표 8〉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특성(1)과 주거만족도

주거특성		주거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n	%	n	%	n	%	n	%		
전체 가구		39	23.6	38	23.0	88	53.3	165	100.0		
주택 소유 형태	非自家	17	43.6	17	44.7	20	22.7	54	32.7		
	自家	22	56.4	21	55.3	68	77.3	111	67.3		
	소계	39	100.0	38	100.0	88	100.0	165	100.0		
		$\chi^2 = 8.57650$		d.f. 2		p < .05					
주택 유형	비단독	8	20.5	12	31.6	34	38.6	54	32.7		
	단독	31	79.5	26	68.4	54	61.4	111	67.3		
	소계	39	100.0	38	100.0	88	100.0	165	100.0		
		$\chi^2 = 4.06120$		d.f. 2		N.S.					
주거 면적	14평 이하	14	35.9	13	34.2	16	18.2	43	26.1		
	15-24평	19	48.7	11	28.9	24	27.3	54	32.7		
	25-34평	4	10.3	9	23.7	29	33.0	42	25.5		
	35평 이상	2	5.1	5	13.2	19	21.6	26	15.8		
	소계	39	100.0	38	100.0	88	100.0	165	100.0		
		$\chi^2 = 18.91579$		d.f. 6		p < .01					
주 거 방 식	재래식/ 연탄보일러	24	61.5	14	36.8	11	12.5	49	29.7		
	기름/ 가스보일러	15	38.5	24	20.7	77	87.5	116	70.3		
	소계	39	100.0	38	36.8	88	100.0	165	100.0		
		$\chi^2 = 32.33381$		d.f. 2		p < .001					
화 장 실	재래식	28	71.8	19	50.0	17	19.3	64	38.8		
	수세식	11	28.2	19	50.0	71	80.7	101	61.2		
	소계	39	100.0	38	100.0	88	100.0	165	100.0		
		$\chi^2 = 33.95718$		d.f. 2		p < .001					
욕 실	없음/비온수	32	82.1	19	50.0	13	14.8	64	38.8		
	온수	7	17.9	19	50.0	75	85.2	101	61.2		
	소계	39	100.0	38	100.0	88	100.0	165	100.0		
		$\chi^2 = 54.13523$		d.f. 2		p < .001					

았다. 또, 무학력은 주거만족도가 낮은 반면에 중졸 이상의 노인은 높게 나타났다.

(3)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① 노인주거유형

노인단독가구 노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노인

주거유형은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완전자립 주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간보호주택, 완전 보호주택의 순이었다. 소득을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충북 거주 단독가구 노인은 성별,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완전 자립주택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거주

〈표 9〉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특성(2)와 주거만족도

주거 특성		주거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n	%	n	%	n	%	n	%
부	작업대	재래식	24	61.5	14	36.8	13	14.8	46	28.8
		입식	15	38.5	24	63.2	75	85.2	114	71.3
		소계	39	100.0	38	100.0	88	100.0	160	100.0
			$\chi^2 = 28.48906$		d.f. 2		p < .001			
업	설	없음/비온수	30	76.9	15	39.5	11	12.5	56	33.9
		온수	9	23.1	23	60.5	77	87.5	109	66.1
		소계	39	100.0	38	100.0	88	100.0	165	100.0
			$\chi^2 = 50.69860$		d.f. 2		p < .001			
비	재료	흙/시멘트	29	74.4	21	55.3	20	22.7	70	42.4
		마루/합성재	10	25.6	17	44.7	68	77.3	95	57.6
		소계	39	100.0	38	100.0	88	100.0	165	100.0
			$\chi^2 = 32.82496$		d.f. 2		p < .001			

〈표 10〉 주거만족도, 노인단독가구상태 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주거만족도	노인단독가구 상태에 대한 만족도	생활만족도
주거만족도	1.0000		
노인단독가구 상태에 대한 만족도	.3705**	1.0000	
생활만족도	.3349**	.4733**	1.0000

min. f of case : 229 ** p < .001

중년층이 원하는 미래 노인주거유형이 성별,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연구결과(전명숙, 1994)와는 상반된다. 이것으로 본 연구 대상인 노인이 서울 거주 중년층 보다 동절적으로 노인자립주택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주거선택시 고려하는 요인

주거선택시 고려하는 주거특성을 보면, 1위가 주택소유형태(31.9%)이며, 다음으로 주택의 질과 거주지역(각각 22.3%), 주택유형(16.0%), 주거면적(5.9%),

방수(1.7%)의 순이었다.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주거선택시 고려하는 주거특성이 다르지 않았으나, 소득별 차이(p < .05)는 나타났다. 월평균소득 60만원 이상은 주택소유형태를, 20만원 미만은 주택의 질과 거주지역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로써 소득 20만원 미만은 주택소유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의 열악한 주거상태에 대한 개선을 더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거이동시에 고려하는 거주지역의 특성은 교통, 주변의 자연환경, 주변의 편의시설, 자녀/친지와 의 근접성의 순으로 밝혀졌다. 자녀/친지와 의 근접성이 4 위라는 사실로써 노인단독가구 노인은 독립적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주거이동시에 거주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평판, 투자가치는 매우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시 고려하는 거주지역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소득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냈다. 즉, 60만원 이상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자녀/친지와 의 인접성을 덜 고려한 반면에, 20만원 미만은 자녀/친지와 의 근접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③ 현재 주택의 유인요인(pull factor)과 축출요인

〈표 11〉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n	%	n	%	n	%	n	%
사회인구학적 특성									
전체 노인		52	21.5	53	21.9	137	56.6	242	100.0
소 득	20만원 미만	26	50.0	19	35.8	14	10.2	59	24.4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7	13.5	9	17.0	34	24.8	50	20.7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6	11.5	9	17.1	23	16.8	38	15.7
	60만원 이상	13	25.0	11	33.3	66	48.2	95	39.3
	소계	52	100.0	53	100.0	137	100.0	242	100.0
			$\chi^2 = 38.23620$		d.f. 6		p < .001		
성 별	남자	17	32.7	10	18.9	62	45.3	100	41.3
	여자	20	38.5	32	60.4	75	54.7	142	58.7
	소계	17	100.0	53	100.0	137	100.0	242	100.0
		$\chi^2 = 2.53445$		d.f. 2		N.S.			
연 령	64세 이하	15	28.8	10	18.9	62	45.6	87	36.1
	65-74세	20	38.5	32	60.4	50	36.8	102	42.3
	75세 이상	17	32.7	11	20.8	24	17.6	52	21.6
	소계	52	100.0	53	100.0	136	100.0	241	100.0
		$\chi^2 = 17.73462$		d.f. 4		p < .01			
학 력	무학력	31	59.6	19	35.8	37	27.0	87	36.0
	국졸	16	30.8	24	45.3	43	31.4	83	34.3
	중졸 이상	5	9.6	10	18.9	57	41.6	72	29.8
	소계	52	100.0	53	100.0	137	100.0	242	100.0
		$\chi^2 = 29.20803$		d.f. 4		p < .001			

(push factor)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이유(유인요인, pull factor)는 집에 정이 들어서/고향이므로(43.8%)가 1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웃사람이 좋아서/자녀집과 가까워서(16.9%), 집이 편리해서(12.9%), 이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12.9%) 등을 들었다. 이것으로써 노인은 주택을 단순한 물리적인 구조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의 생활과 역사가 담긴 정서적인 구원체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유인요인에서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 소득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자 노인은 집에 정이 들어서/고향이므로가 많은 반면에, 여자 노인은 이웃 사람이 좋아서/자녀

집과 가까워서가 높았다. 이로써 남자 노인은 현 주택에 거주하는 이유로 지연과 가문을 더 중시하는 반면에 여자 노인은 이웃사람이나 자녀와의 정에 더 집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이동 희망 여부를 보면, 76.4%의 노인이 주거이동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은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본 연구 대상 노인; 28.4년)이 있어서 자기가 살던 집, 가까이 지내던 이웃 사람, 고향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강하다는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

〈표 12〉 노인주거유형

주거유형		완전자립주택		중간보호주택		완전보호주택		전 체	
		n	%	n	%	n	%	n	%
사회인구학적 특성									
전 체 노 인		125	52.3	53	34.7	31	13.0	239	100.0
소 득	20만원 미만	36	28.8	16	19.3	7	22.6	59	24.7
	20-40만원 미만	27	21.6	15	18.1	6	19.4	48	20.1
	40-60만원 미만	20	16.0	8	9.6	10	32.3	38	15.9
	60만원 이상	42	33.6	44	53.0	8	25.8	94	39.3
	소 계	125	100.0	83	100.0	31	100.0	239	100.0
		$\chi^2 = 15.91495$		d.f. 6		p < .05			
성 별	남 자	52	41.6	32	38.6	14	45.2	98	41.0
	여 자	73	58.4	51	61.4	17	54.8	141	59.0
	소 계	125	100.0	83	100.0	31	100.0	239	100.0
			$\chi^2 = 0.44575$		d.f. 2		N.S.		
연 령	64세 이하	40	32.3	32	38.6	15	48.4	87	36.6
	65-74세	58	46.8	34	41.0	9	29.0	101	42.4
	75세 이상	26	21.0	17	20.5	7	22.6	50	21.0
	소 계	124	100.0	83	100.0	31	100.0	238	100.0
			$\chi^2 = 3.85656$		d.f. 4		N.S.		
학 력	무학력	49	39.2	24	28.9	12	38.7	85	35.6
	국 졸	41	32.8	32	38.6	10	32.3	83	34.7
	중 졸 이 상	35	28.0	27	32.5	9	29.0	71	29.7
	소 계	125	100.0	83	100.0	31	100.0	239	100.0
			$\chi^2 = 2.47063$		d.f. 4		N.S.		

인복지를 목적으로 주거이동을 유도하는 방법은 피해야 할 것이다. 주거이동의 의사가 없는 노인을 제외하고 이사가고 싶은 이유(추출요인; push factor)를 조사한 결과, 집이 불편해서가 5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통이 불편해서와 주변의 시설이 불편해서가 각각 20.0%와 9.1%로 밝혀졌다. 추출요인에서는 소득,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④ 주거환경 개선 의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묻은 결과 42.4%가 집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로써 노인은 주거시설수준이 낮더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집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노인을 제외하고 주거환경 개선희망 항목을 조사한 결과, 도배와 장판(24.0%)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은 난방/온수시설 개조(21.5%), 화장실 개조(19.8%), 노후부분수리(19.0%)의 순이었다. 부엌 개조, 가구/커튼구입에

대한 희망은 적게 나타났다. 주거환경 개선 희망은 소득,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이 20만원 미만이거나 무학력인 노인이 노후부분의 수리나 난방 및 온수시설의 개선을 희망하는 반면에, 소득이 60만원 이상이거나 중졸 이상의 노인은 부엌개조 또는 가구/커튼구입에 대한 희망이 높았다. 이것으로 소득이 높거나 중졸 이상 노인은 노후부분이 이미 보수되었거나 난방 및 온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그 다음 단계인 부엌 개조 또는 가구/커튼 구입을 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4)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상태에 대한 만족도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3.2%, 불만족이 27.2%로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노인이 더 많았다.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소득 20만원 미만, 여자노인 75세 이상, 무학력 노인은 불만족해 하는 반면에, 소득 60만원 이상, 64세 이하, 중졸 이상은 만족해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11>에 제시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만족도에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로써 노인

<표 13>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상태에 대한 만족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만족도		보통		만족		전체		
	n	%	n	%	n	%	n	%	
전체 노인	66	27.2	72	29.6	105	43.2	243	100.0	
소득	20만원 미만	27	40.9	24	33.3	9	8.6	60	24.7
	20만원 이상	16	24.2	15	20.8	18	17.1	49	20.2
	40만원 미만	10	15.2	11	5.3	17	16.2	38	15.6
	40만원 이상	13	19.7	22	30.6	61	58.1	96	39.5
	60만원 미만	66	100.0	72	100.0	105	100.0	243	100.0
	60만원 이상	66	100.0	72	100.0	105	100.0	243	100.0
$\chi^2 = 35.53037$			d.f. 6		p < .001				
성별	남자	19	28.8	29	40.3	52	49.5	100	41.2
	여자	47	71.2	43	59.7	53	50.5	143	58.8
	소계	66	100.0	72	100.0	105	100.0	243	100.0
$\chi^2 = 7.22780$			d.f. 2		N.S.				
연령	64세 이하	17	26.2	16	22.2	55	52.4	88	36.4
	65-74세	23	35.4	37	51.4	42	40.0	102	42.1
	75세 이상	25	38.5	19	26.4	8	7.6	52	21.5
	소계	65	100.0	72	100.0	105	100.0	242	100.0
$\chi^2 = 32.42901$			d.f. 4		p < .001				
학력	무학력	35	53.0	34	47.2	19	18.1	88	36.2
	국졸	22	33.3	28	38.9	32	30.5	82	33.7
	중졸 이상	9	13.6	10	13.9	54	51.4	73	30.0
	소계	66	100.0	72	100.0	105	100.0	243	100.0
$\chi^2 = 46.13520$			d.f. 4		p < .001				

은 단독가구상태로 생활하는 것 자체를 불만족해하기 보다는 주거수준이 열악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북 노인단독가구의 경제환경을 보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 가구는 40% 이하로 적지만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으며, 자녀보조를 받는 가구는 70% 정도이나 그 비중은 크지 않다. 특히, 공적부조나 연금이 있는 가구는 20% 이하로 그 비중 또한 매우 미미하다. 자산(주택을 제외함)을 소유한 가구는 부채를 진 가구보다 많으나, 지출구조에 있어서는 필수적 성격을 띤 비목의 지출이 많다.

소득, 자산, 소비구조는 연령, 학력, 거주지역, 주거소유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크다. 이와같이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노인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며,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확보는 경제적 안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주거환경을 보면, 자기소유의 단독주택에 많이 거주하며, 주택당 1.6가구가 거주하며, 가구당 평균 23평 크기의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고 한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다. 욕실, 부엌 등의 주거설비 수준은 열악하지만 주거만족도는 낮지 않은 편이고, 이사가고 싶어하지 않으며,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집에 투자할 의지가 없다. 또, 노인단독가구 상태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만족해 하지 않는다.

주거만족도의 관련변인은 주택소유형태, 주거면적, 주거이동방향, 주거시설이며, 주택유형과 거주가구수는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거시설 수준은 주거만족도와 상관관계가 크고, 주거만족도는

단독가구상태에 대한 만족도,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크다. 따라서 이들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제환경과 주거환경에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에 대한 폭넓은 실태조사와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둘째,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안정은 자녀보조와 같은 가족 지원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 해결방법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공적부조를 지원받는 가구의 비율은 매우 낮고 지원금액 또한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금이나 공적부조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세째, 노인에게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일부 행해지고 있으나 그 소득수준은 매우 낮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 노인이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네째, 노인은 소득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개선 자체를 어려운 일로 생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주거 개선을 유도하기 보다는 개축/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제언한다.

다섯째, 주택관련 지원사업은 부엌에 수도설치, 화장실 개선, 욕실설치/온수공급, 난방방식 또는 부엌바닥 개선, 입식 작업대 설치 등이다. 이러한 사업은 실태조사와 개별상담, 그리고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경제적 제약이 없는 노인도 주택 관련 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제적 제약이 없는 노인에게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주택의 개보수를 위한 계획, 인허가업무, 공사비 산출, 관련서류 작성, 공사감독 및 진행 등을 도와줄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1) 김대년(1992). 대도시 가족의 주거생활역사(Housing History)에 관한 연구(1) -주택소유형태, 주택 유형, 거주지역,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8), 71-80.
- 2) 박경란, 제미경, 오찬옥(1995).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가족, 소비,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공모 과제.
- 3) 심영(1992). 노인가계의 주거비지출과 경제복지, 충북가정학회지, 1(1) 57-68.
- 4) 전명숙, 강순주(1995). 서울시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노인주거환경(1). 한국주거학회 6(1).
- 5) 조재순, 신경주, 박인숙, 신경주(1995). 미국의 노인주거 관련 연구 경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 권 10호, 13-18.
- 6)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 7)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cycle hypotesis of saving : Aggre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55-84.
- 8) Boalt, C. & Akerman K.(1984). Rearch on the elderly and their life environment. In Reinius K. L. The elderly and their environment-Research in Sweden. 135-149. Svensk Bvaqqtianst.
- 9) Borjesson, S.(1984). State support for the elderly. Reinius K. L. The elderly and their environment-Research in Sweden. 12-21. Svensk Bvaqqtianst
- 10) Hoyt, E.E.(1938). Consumption in our society. New York : McGraw-Hill Book.
- 11) Magrabi, F. M., Chung, Y.S., Cha, S.S. & Yang, S.J.(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Prasger.
- 12) Tynan, A.C. & Drayton, J.L.(1988). The Neglect of the Older Consume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159-171.